

공동창업자의 리스크 관리

공동창업,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



공동 주주로 구성된 회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가 필요합니다.

공동창업자플랜 개요

'공동창업자 플랜'은 1) 공동대표이사로 구성된 기업 또는 2) 주요 주주가 다수로 구성된 공동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공동창업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필수 플랜입니다.

1. 기업경영권 방어

주식양도제한

기존 주주 외 경영권 위협할 수 있는 제 3자로의 양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

필수 절차

- ① 정관에 주식양도제한규정 포함
- ② 주식양도제한규정 변경 등기

공동 경영 리<u>스크</u> 헤지



2. 유가족 보호

동업자 지분 자기주식 취득

공동창업자 유고시 유가족의 상속지분을 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속

<u>필수절차</u>

- ① 자기주식취득 약속이행 계약서 작성 (공증)
- ② 자기주식취득재원마련을 위한 법인계약체결 (피보험자: 공동주주, 계약자•수익자: 법인)

주식양도제한규정이란

주식양도 제한의 의의 및 취지

- 상법상 주식 양도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 원칙
- 다만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**이사회의 승인** (또는 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) 을 얻도록 할 수 있음 (상법 제 335조 제 1항)
- 소규모 비상장 회사가 **외부자본에 의한 회사경영권의 침탈 내지 M&A에 대비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**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함
- 단, 이사회 승인 (또는 주주총회)을 얻게 하는 것 외에 양도제한 방법은 상법상 인정되지 않음





주식양도제한 규정 정관 예시

정관 제14조 (주식의 양도 및 제한)

- -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.
 - ② 당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당 회사의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이 때, 주식양도승인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주식양도 제한의 요건



- ① 양도제한을 받는 주식의 범위 소규모회사의 주식 (주권상장회사는 양도 제한 불가)
- ② 증여/매매 등에 의한 양도만 제한 가능 포괄승계(상속, 합병)에 의한 주식이전은 제한 받지 않음
- ③ 정관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을 것
- ④ 정관에 규정 두었더라도 **등기부등본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등기**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 수 있음 (상법 37조 1항)
- ⑤ 주식청약서에 기재 또는 주권에 기재



주식의 양도제한은 주주와 주식거래를 하는 중대한 이해문제를 야기하므로 다수인에게 주식 양도 제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!

제한 있는 주식의 양도 절차

♪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청구

- 주주의 주식양도 승인청구시 회사는 1월 이내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
- 기간 내 거부의 통지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승인 있는 것으로 간주
- 이사회 승인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승인 통지할 경우 효력 인정

양도승인거부 통지시

양도승인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이내 회사에 대해 양도의 상대방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(주주 선택사항)

- 1) 이사회가 상대방 지정 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 매수 상대방 지정해서 서면 통지
- 2) 회사에 주식매수청구
 - ✓ 20일 이내 회사가 주식 매수하도록 청구
 - ✓ 회사는 2개월 이내 주식 매수해야 함, 매매가액은 주주와 회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
 - ✔ 매수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(시가로 산정)